

## 농수축산식품분야 201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농림수산식품부

올해부터 닭, 오리고기와 계란 등에 대한 포장 유통이 의무화되고, 술 품질인증제가 도입,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 1. 닭·오리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닭·오리고기와 식용란(계란)의 포장유통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축산물의 유통·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 의무는 2011년 1월부터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또한 별도의 제한 없이 유통·판매돼 온 식용란(계란)에 대해 2011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 2. 축산물 HACCP 정기 심사 수수료 면제

그동안은 축산물 HACCP 지정업체의 경우 매년 수수료를 내고 정

기심사를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정기심사가 폐지되고 HACCP 운용여부에 대한 조사 평가로 전환된다.

### 3. 농지연금 시행

1월 1일부터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모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고,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하여 추가 수입이 가능하도록 이용권이 유지된다.

가령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신청접수 및 지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다.

### 4.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 확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가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를 확대(45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포함)하여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부정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는 고령은퇴농업인(65세~70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

는 제도로, 기존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범위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까지 확대하여 농업기반이 부족한 젊은 농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보조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조 2항 신설).

### 5. 술 품질인증제 실시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술 품질인증 기준은 주종별로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 제품의 품질기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증마크는 '가' 형과 '나' 형으로 구분해 '가' 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하고, '나' 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토록 했다.

술 품질인증은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한다. 